## 공직선거법위반

[수원지방법원 2012. 12. 5. 2012고합971-1(분리)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김훈영(기소, 공판), 최두헌(공판)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이재화 외 1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벌금 3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.

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.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[이유]

]